

## 학생성적소명심사위원회 내규

2013. 9. 1. 제정

2020. 12. 9. 개정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(이하 '의대·의전원') 학생성적심사소명위원회(이하 '위원회'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장/의전원장, 부학장(교무), 부학장(학생), 교무차장, 임상교무부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0.12.9.)(개정 2018.2.10.)

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은 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수 중에서 학장/의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부학장(교무)이, 간사는 교무차장이 한다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12.9.)(개정 2018.2.10.)

④ 당연직 위원 이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의과대학·의전원 학생의 성적에 대하여 학장/의전원장의 소명심사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심사한다. (개정 2020.12.9.)

제4조(학생성적소명심의 절차 및 결정) ① 학생은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확정 시부터 별도로 안내된 기간 이내에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 2018.2.10.)

② 학생이 상기 제1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성적소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적정정 기간 이내에 별지(서식1호)의 학생소명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학장/의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성적소명심사의 대상여부는 학장/의전원장이 판단한다. (개정 2018.2.10.)

③ 위원장은 학장/의전원장의 소명심사 요구가 있을 시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한다. (개정 2018.2.10.)

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과목 책임교수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. 교과목 책임교수는 성적평가와 관련되는 증거서류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의거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에서 성적 조정을 권고할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 책임교수는 지체 없이 합리적으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.

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 및 조정내용을 학장/의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학장/의전원장은 소명심사의 대상이 된 학생에게 별지(서식 2호)의 학생성적소명심의 결과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2.10.)

⑧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본교 지침에 따른다. (신설 2018.2.10.)

제5조(회의) ①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학장/의전원장의 소명심사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단, 소명심사 대상이 되는 과정책임교수가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배제한 후 결정한다.

부 칙 (2013. 9. 1. 제정)

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8. 2. 10. 개정)

이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0. 12. 9. 개정)

이 내규는 202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